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90
----------	-------

발의연월일 : 2026. 4. 16.

발 의 자 : 김선교 · 김위상 · 이현승
박덕흠 · 박충권 · 김승수
김상훈 · 정동만 · 최보운
김미애 · 김성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격을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2023년도부터 교육부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았고,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은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고 있으나 현재 수의과대학 인증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행정 및 예산 처리 등에 어려움이 있고 대학별 교육 환경이 편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그동안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이 「수의사법」의 목적에 추가 반영될 정도로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의 국가시험과 같이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강화함으로써 의료 전문 자격제도 간 인증 체계 형평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수의사 인력이 양성·배출될 수 있도록 하며,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수의학을”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학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학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을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

다)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응시자격) ① <u>수의사 국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u></p> <p>1. <u>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u>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p> <p>2. <u>외국에서 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학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그 국가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u></p> <p>② (생략)</p> <p><신설></p>	<p>제9조(응시자격) ① ----- ----- ----- ----- -----.</p> <p>1. 「<u>고등교육법</u>」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u>수의학을</u>-----.</p> <p>2. ---<u>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을</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u></p>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제1
항제1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
로 본다.